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. 5. 12 선고 2020가단13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5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임야 3,966m²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8. 7. 20. 접수 제306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문현호

별지